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10. 19 선고 2021가단529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김승철, 김현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윤희

피 고 1. B영농조합법인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연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0. 19.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영농조합법인과 D 사이의 2020. 6. 22.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D에게 광주지방법원 2020. 6. 24. 접수 제1149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D 사이의 2020. 3. 23.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D에게 광주지방법원 2020. 3. 24. 접수 제577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으로부터 2018. 9. 27.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9. 3. 27.로 된 약속어음과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9. 9. 21.로 된 약속어음을 각각 발행교부받은 어음채권자이다.

2) 원고는 2020. 2. 12.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3) 피고 C은 2020. 3. 24.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신청착오로 등기부상에는 ‘2020. 3. 23. 매매’로 기재되었는바, 편의상 위 기재에 따라 표시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20. 3. 24.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D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의 피보전채권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이 하는 육상골재채취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원금 및 이익금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위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그중 3,000만 원을 D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D에 대하여 7,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은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원인채권(투자금 및 이익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발행해준 것인데, 투자행위는 그 개념상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고 이익금 역시 실제로 이익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원인채권은 주식회사 E가 골재채취업 영위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여야 실제로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가 위 어음금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 원인채권의 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어음채권의 원인채권이 부존재 또는 소멸하여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 C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3578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 C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인정하는 위 약속어음금 채권 잔액 7,000만 원(=1억 원-3,000만 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화량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의 [D] 을 채무자로 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중서 2018년 제339호 액면금 5,000만원, 발행일 2018.9.27., 지급기일 2019.3.21.의 어음공정증서(갑1호증), 위 [D] 을 피고로 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중서 2018년 제340호 액면금 5,000만원, 발행일 2018.9.27., 지급기일 2019.9.21.의 어음공정증서(갑2호증, 이하 위 2통의 어음공정증서상의 채권¹⁾을 이하 '이 사건 채권' 이라 함)를 소지하고 있는 [D] 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피고 [B] 영농조합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20.6.2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20.6.26.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익자(갑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 [C] 은 별지 목록 2, 3.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20.3.2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20.3.24.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익자입니다(갑4호증의 1, 2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피고들의 원고를 해하는 행위

가, [D] 과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의 법률행위

1) 원고의 [D] 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2018.9.27. 성립하였습니다.

2)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 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성립 이후인 2020.6.22.자 매매를 원인으로

1) 1억원 중 3,0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7,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6.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나. D 과 피고 C 의 법률행위

피고 C 은 별지 목록 2.,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 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성립 이후인 2020.3.2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20.3.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다. D 의 무자력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D 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외에 소유하는 다른 재산이 없고, G 에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3,400만원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라. 피고들의 사해행위

- 1) 피고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는 다음 아닌 위 D 이고(갑5호 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아파트)에 관하여 D 이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D 이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근저당권자인 G 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D 이 변제하고 있고,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여전히 D 입니다.
- 2)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주택)에는 피고 C 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D 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3)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D 과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는 최소한 원고를 해하는 행위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결 론

별지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북구 동〔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107.668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광주광역시 북구 대 36211㎡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36211분의 65.6333

2. 광주 남구 대 1362㎡ 중 피고 공유자 지분 412분의83. 광주 남구 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42.9㎡

- 끝 -

